

제외주제 문화원 등 특별감사 결과보고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2. 21. ~ 3. 2. (7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내용

- 주요사업 및 장관지시사항 이행실태와 문화원장에 대한 관계자 평가 등
- 예산, 문화강좌 수입금 등 공금 집행시 회계 관련규정 준수여부
- 한국관광공사 등 해외사무소 보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나. 감사결과

(단위: 건, 천원)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주의	시정	개선	통보 등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3	-	-	-	-	-	-	-	1	6	3	3	-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감사처분 요구내용

[중국·일본 주재 문화원 및 해외기관 등]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재외주재 문화원 홍보물 배포체계 및 활용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자체 제작한 홍보물이 재외주재 문화원에서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문화원을 통하여 각 국가별 지역별 문화원 이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미흡하고, 재외주재 문화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재외주재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 등 청소년 대상의 홍보물 등은 부족한 반면, 배포받은 홍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료실 등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이 현지 실정에 맞는 최신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 홍보물 지원 체계 강화
2	<p>○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지원' 장관지시사항("11. 2. 7. 지시)을 이행하기 위해, 이를 재외주재 문화원에 시달할 때에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연락보다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대로 공식 문서로 할 필요가 있는데도, 담당 직원이 이메일로 업무연락하여 동 업무추진이 부진함. - ◇◇ 및 □□□문화원장이 동 업무연락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재외주재 문화원에서 장관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추진실적이 미흡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지시사항 등 주요업무는 공식문서로 지시하거나 전달
3	<p>○ 재외주재 문화원 및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간 협력체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차원의 현지 행사시 협조 외에는 문화원 및 ◇◇◇◇◇◇◇◇·▲▲▲▲▲▲▲▲·△△△△△△·▽▽▽▽ 재외주재 기관 간 정례회의·자료공유 등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미흡 - 별도 사무소를 두고 1명의 직원 등이 근무하는 ◇◇◇◇◇◇◇◇, △△△△△△ 및 ▲▲▲▲▲▲▲▲는 해외사무소 대신 소속 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하여 문화원장 지휘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협력체계 구축, 예산 절감 및 내부 통제에 유리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회의 개최, 상호 업무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업무 협력체계 마련 - ◇◇◇◇◇◇◇◇ 등 3개 단체 소속직원의 문화원 파견 방안 등 효율적 방안 강구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4	<p>○ ◆◆문화원 대관 선정 기준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은 자체 「한국문화원 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동 규정에 ㉹㉹홀 등 대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직원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통하여 ㉹㉹홀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관하고 있어 ㉹㉹홀을 사용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원은 문화예술인 등이 문화원 ㉹㉹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홀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의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 선정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대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5	<p>○ ◆◆문화원 건물 권리보전 조치 미흡 및 □□□문화원 문화강좌 등 운영 공간 협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3.22 개원한 ◆◆문화원 건물이 ◎◎정부로부터 외교 건물로 승인을 받지 못해 미등기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문화원 현판을 게시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문화원 건물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 ◎◎사무소 등 3개 입주기관은 사무소 등록을 위하여 문화원에 입주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것처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임대료 납부 - □□□문화원은 공간이 협소하여 의자 등 교육 기자재를 옮겨가면서 문화강좌를 실시, 문화원 이용 ●●국민들에게 궁색한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고, 불편한 교통과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p>○ 통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한국문화원 건물의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 이행 - □□□문화원 공간확충 방안 강구· 시행
6	<p>○ 재외주재 문화원 예산집행관리 프로그램 기능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09년도에 개발하여 '10.1월에 재외주재 문화원(문화홍보관 포함) 등 31개 공관에 보급한 '예산집행관리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능이 없어 매달 문화부 지출관 등에게 보고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시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보고서는 이전 방법인 수기로 작성하는 등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 또한, 감사원에서 재외공관 감사결과('10.2.22.~3.12.) 회계집행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2010.9월 중 재외주재 문화원·홍보관 회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웹망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10년도 말까지 완료하기로 예정하였으나, '11. 3. 7.에서야 개발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발 중인 웹 회계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구축 -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7	<p>○ □□□문화원 한국어 강좌 등 수입금 회계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에 세입 조치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대체경비로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 문화원이 실시하는 한국어강좌 및 문화강좌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한 문화부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국고에 납입하여야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해당 강좌용도 등에 직접 사용함. - 특히, □□□문화원은 '09년부터 '10년 기간 중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21,559천 원(291,046천 원)을 문화원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회계연도 초 문화부 예산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동 강좌 비용이 아닌 문화원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집행 	<p>○ 개선요구(인사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회계규정을 위반한 □□□문화원장 인사조치와 문화원 한국어강좌 및 문화강좌 수입금 처리 등에 대한 지침 마련·시행 - 「국고금관리법」 제 7조의 규정을 위반한 □□□문화원장 엄중 '경고'
8	<p>○ 민간보조금을 국가기관(문화원)에 지원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보조하여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는 '08 ~ '10 기간 중 “해외 한국영화 상영행사” 및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이들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직접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문화원에 간접보조하여 사업 추진(283,844천 원) 	<p>○ 통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강구
9	<p>○ ◆◆사무소 현지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무소는 '08 ~ '10 기간 중 일용직 현지직원 채용시 자체규정이 제정('10.12.23.)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용직으로 볼 수 없는 4개월 ~ 27개월 간 근무한 실질적으로 사무원에 해당되는 현지직원을 계약서 없이 채용하여 자체규정 「해외사무소 운영 및 직원의 해외기관 파견에 관한 규칙」, 「사무원 및 일용직 관리규칙」 및 현지 국가(◎◎)의 「노동계약법」 규정 위반 - 또한, ◆◆사무소는 '08 ~ '10 기간 중 계약서 없이 채용한 현지 직원(4명)에게 현금 이외의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닌데도 인건비 58,985천 원을 통장에 계좌이체 처리를 하지 않고 사유서 첨부도 없이 수기영수증에 사인만 받고 지급하여 자체규정 「해외사무소 운영 및 직원의 해외기관 파견에 관한 규칙」 위반 	<p>○ 시정 및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관련 미비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 자금의 지출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0	<p>○ 재외주재 문화원 인력보강 및 지원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에 정규직 공무원은 문화원장 1인으로 문화원장은 주재국내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실무업무까지 하여야 하므로 업무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규모가 큰 문화원에 행정직(5급~6급) 1명을 보강하여 문화원장은 대외활동 및 기관장 업무, 행정직은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류 등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원 인력 충원 필요 - 국가별·지역별로 차별있게 한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의 재외주재 문화원 지원기능 강화 필요 	<p>○ 통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주재 문화원 주재관 및 행정원 인력 보강 및 해외홍보원 지원기능 강화 방안 강구
11	<p>○ 업무추진비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지침’ 상 업무추진비의 사용시 사전에 기본 결재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사전 결재 없이 집행 후 지급 결의서에만 집행내역을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며(‘08 ~ ‘10 기간 중 집행액 : 394건/57,825천원), 50만 원 이상 집행건의 경우도 참석자 전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08년 9건 5,374천 원). 	<p>○ 현지조치</p>
12	<p>○ 1일 출장시 외교부 지침 미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회계 투명성 제고 지침’에 1일 출장의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식비도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일비를 지급하고 식비도 정액 그대로 지급 · ◆◆문화원 : ‘08 ~ ‘09년간 6건 \$610(한화 약 701,500원) · ◇◇문화원 : ‘08 ~‘09년간 14건 \$1,322(한화 약 1,520,300원) 	<p>○ 현지조치</p>
13	<p>○ 비밀관리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 문서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 ‘08 ~ ‘10 기간에 ◆◆문화원(비밀 37건, 대외비 404건) 및 ◇◇문화원(비밀 11건, 대외비 10건)은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관리 	<p>○ 현지조치</p>